†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

재단법인 대구가톨릭청소년회

수신자 : 각 시설장
(경 유) : 업무 담당자
제 목 : (재)대구가톨릭청소년회 산하시설 신고의무자 교육실시 및 결과보고서 제출 안내

"청소년의 꿈, 사랑으로 함께 키워갑니다."

1. 귀 기관에 하느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2. 관련: 청소년과-6919[2021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적 제출 요청(청소년단체·법인)](2021.4.20.), 청소년과-9895[2021년 청소년단체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및 실시결과 제출](2021.6.15.)
3. 위호와 관련 본 법인의 산하시설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과 관련된 교육안내를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참고하여 교육하시기 바라며, 붙임파일에 있는 교육안내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2021.10.29.(금)까지 법인사무국 메일(youth@dgc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안내 1부.
2.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안내 1부. 끝.

재단법인 대구가톨릭청소년회 이사장 직인생략

수신자 군위군청소년수련원장, 대구광역시교육청 가정형Wee센터장, 대구광역시청소년수련원장, 대구청소년창의센터장, 대안교육센터장, 무학연수원장

전결 2021.7.2.

담당 **김성연** 김성연인

사무국장 **문창규**

협조자

시행 대가청 2021-051(2021. 7. 2.) 접수

우 41969 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로4길 112 / E-Mail : youth@dgca.or.kr
전화 053-250-3069 전송 053-250-3060 /

/ 공개

<붙임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매뉴얼

1. 교육내용

1)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3) 피해아동 보호 절차 등

2. 교육목적

-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신고의무자로 지정함으로써 학대피해 아동 조기 발견 및 보호

3. 교육시간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상황을 고려하여, 매년 1시간 이상 실시

4. 교육대상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시설(청소년시설 및 단체에 해당)의 장과 종사자

5. 교육형태

- 각 시설의 여건 및 상황에 맞게 교육실시
- 강사, 교육교재(ppt, 동영상)를 활용한 집합교육, 시청각 교육 또는 인터넷강의 실시

6. 교육방법

- 강사, 교육교재(ppt, 동영상)를 활용한 집합교육, 시청각 교육: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
  ①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적관리시스템(iedu.ncrc.or.kr) 접속 후 교육콘텐츠 클릭→콘텐츠 사용신청 클릭
  ② 다운로드 원하는 콘텐츠(동영상,ppt)클릭→콘텐츠 사용신청하기 클릭→신청자 정보 작성 및 등록
  ③ 콘텐츠 다운로드 클릭→성명 및 이메일 입력→승인 상태 및 상세정보 확인→상세정보 내 첨부파일 또는 다운로드링크 별도 안내 예정
  ※ 교육콘텐츠 신청 후 승인까지 2~3일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인터넷강의 실시: 아래의 홈페이지 로그인 후 검색창에 '아동학대' 검색 후 교육이수
  ① 서울시 평생학습포털(sll.seoul.go.kr)
  ② 경기도 지식(GSEEK)(www.gseek.kr)
  ③ 나라배움터(http://e-learing.nhi.go.kr/)
  ④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lms.educare.or.kr)
  ⑤ 중앙교육연수원(www.neti.go.kr)

7. 교육 결과보고서 제출

- 집합교육 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참석자 명단 작성
- 인터넷강의 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 제출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에 <교육방법에 따른 증방자료 목록> 참고하여 작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

시설 또는 기관명			
소재지 (시도 및 시군구)	*서울 종로구*	시설장 (기관장) 성명	*홍길동*
교육일시	*ex)* *2021.10.21.-2021.11.21.*	강사명(소속)	**집합 강사교육일 경우만 작성*
총 인원수 **2021.12.31.기준*	*100명*	교육 수료인원	*80명*
교육시간	*1시간 30분*	교육방법	*(집합) 강사교육,* *(집합) 시청각교육,* *(인터넷) 복지부 위탁 기관,* *(인터넷) 복지부 콘텐츠 탑재 기타 기관 中 1개 이상 선택*

* 교육방법 중 '(인터넷) 복지부 콘텐츠 탑재 기타 기관'을 선택한 경우 추가 작성

교육(탑재)운영 기관 명		탑재 사이트 주소	*www.edu.or.kr*

< 교육방법에 따른 증빙자료 목록(예시) >

○ 교육방식에 따라 아래 증빙자료를 1차 취합(관리·감독) 기관(시도, 시군구, 보건소, 교육청, 교육지원청 등)에 제출

※ (집합 교육) 강사 교육 또는 복지부가 제공·승인한 동영상 자료를 활용한 시청각 교육

- (집합 강사교육) 강사 프로필(자격기준 검증), 교육 콘텐츠 자료(교육내용 검증), 교육계획, 교육사진, 참석자 서명 첨부
- (집합 시청각교육) 교육계획, 교육사진(참석자 및 동영상 화면 포함*), 참석자 서명 첨부
  * 복지부 제공(또는 복지부가 승인한) 콘텐츠 사용 필요
- (비대면 실시간 교육) 집합 시청각 교육의 증빙자료 예시를 참고하되, 비대면 실시간 교육 형태, 방법 등에 따라 1차 취합기관에서 별도 증빙요건 기준 설정 가능

※ **(인터넷 강의)** 보건복지부 위탁 기관 또는 복지부가 제공·승인한 콘텐츠를 탑재한 기타 기관

- (복지부 위탁·운영 기관) (개인) 교육 수료증 취합 또는 (기관별 나라배움터 등) 기관 단위 교육 이수자 명단(교육수료일 등 포함) 제출
- (복지부 제공·승인 콘텐츠를 탑재한 기타 기관) 교육운영 기관 명, 콘텐츠 탑재 사이트 주소, 해당 교육 사이트에서 발행한 교육 이수증 등 제출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참석자 명단(*집합교육 시 작성*)

일시 : 2021. . .

No.	성 함	소 속 / 직 급	서 명	비 고

<붙임2>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매뉴얼

1. 교육내용

1) 긴급지원 대상자의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긴급지원 대상자 발견 시 신고방법
3) 긴급지원 대상자 보호 절차 등

2. 교육목적

- 긴급지원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 교육을 통해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복지사각지대를 예방

3. 교육시간

-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상황을 고려하여 매년 1시간 이상 실시

4. 교육대상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제3항에 따른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장과 종사자

5. 교육형태

- 광범위한 교육대상, 전문 강의인력 부재 및 교육에 따른 재정 부담 발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교육자료 제공을 통한 시설 자체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실시

6. 교육방법

- 집합교육(자체교육): PPT 형태 교육자료 활용-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mohw.go.kr)
  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접속 후 정보 카테고리→연구/조사/발간자료 클릭
  ② 긴급복지신고 검색→2021년 긴급복지신고의무자 교육동영상 게재 및 교육안내 클릭→첨부파일 확인
- 사이버교육 실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의무교육홈페이지(http://in.kohi.or.kr)에서 교육이수
  ① 홈페이지 접속 후 회원가입 및 로그인(로그인을 하지 않으면 교육과정이 검색되지 않음)
  ② 회원가입 시 개인회원 가입으로 클릭, 기관명(기업명) 선택 및 입력
  ③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긴급복지신고의무자교육' 클릭→맨 위에 위치한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편에서 오른쪽 수강신청 클릭
  ④ 과정검색 및 신청에서 신청과정과 신청자 정보를 확인한 후 화면 맨 아래에 있는 수강신청 클릭
  ⑤ 학습하기를 클릭하여 1차시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이해', 2차시 '긴급복지지원신고의무자 제도의 이해' 학습(진도율 100%, 설문조사를 완료해야 수료)
  ⑥ 수료 후 로그인 상태에서 메인화면 [학습하기(수료증 다운로드)]→[수료증 출력]→수료증 출력과 관련된 내용 확인 후 [출력] 클릭

※ 코로나19로 인해 가급적 집합교육보다는 사이버교육 이수를 요청

7. 교육 결과보고서 제출

- 집합교육 시 긴급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와 긴급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참석자 명단 작성
- 사이버교육 시 긴급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 작성
- 계약을 통한 민간업체에 위탁교육을 실시한 경우 긴급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기관장(시설장) 확인서 작성

긴급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

<table>
<tr><td>시설 또는
기관명</td><td colspan="3"></td></tr>
<tr><td>소재지
(시도 및 시군구)</td><td></td><td>시설장 또는
기관장 성명</td><td></td></tr>
<tr><td>기관유형</td><td>종합병원, 유치원,
어린이집 등 기재(붙임1)</td><td>대상 각호</td><td>1호, 2호, 3호 등 기재
(붙임1)</td></tr>
<tr><td>교육일시</td><td>집합교육인 경우에만 작성</td><td>교육장소</td><td>집합교육인 경우에만 작성</td></tr>
<tr><td rowspan="3">교육대상</td><td rowspan="3">명
(기관 내 신고의무자수)</td><td rowspan="3">이수인원</td><td colspan="2">총 명</td></tr>
<tr><td>집합교육</td><td>사이버교육</td></tr>
<tr><td>명</td><td>명</td></tr>
<tr><td colspan="4"><증빙자료>

※ 집합교육 시 현장사진 및 교육참석자 서명을 첨부,
사이버교육 시 교육이수증 첨부</td></tr>
</table>

* 긴급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참석자 명단(*집합교육 시 작성*)

일시 : 2021. . .

No.	성 함	소 속 / 직 급	서 명	비 고

긴급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기관장(시설장) 확인서

시설 또는 기관명			
소재지 (시도 및 시군구)		시설장 또는 기관장 성명	
위탁기관 또는 업체	*기관 또는 업체명*		
교육일시	*집합교육인 경우에만 작성*	교육자료 확인	*O / X 교육자료가 보건복지부 제공 자료임을 기관 또는 시설장이 확인*

<기관장(또는 시설장) 확인사항>

※ 계약을 통한 민간업체에 위탁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만 작성

- (1), (2)는 교육이수인정에 따른 필수 기록사항임

1. 0000(기관명, 시설명 기입) 기관(또는)시설은 기관장(또는 시설장) 000(기관장, 시설장 성명 기입)의 확인하에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한 동영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음

2. 긴급복지신고의무자 교육 시행에 따른 비용은 지불하지 않았고, 교육대상자에게도 납부하도록 하지 않았음

기관장(또는 시설장)의 책임하에 위와 같이 위탁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0000년 00월 0일

00000 기관명(또는 시설명)

00000 기관장 성명(서명)